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지방채 발행 사유

○ 성주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따라 조기에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직영으로 조성코자 함에 있어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고자 함.

3. 지방채 발행계획

□ 발행규모

○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: 104억원

○ 2012년도 신규발행액 : 100억

□ 발행계획

○ 차입조건 :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

○ 상환재원 : 군비(분양대금)

○ 차입시기 : 2012년 10월~11월

○ 차 입 선 : 도 지역개발기금

4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,

○ 지방재정법 제11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·제10조·제11조

5. 참고사항

○ 2012년 지방채발행동의안 : 붙임과 같음

6. 검토의견

□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,

○ 지방자치법

- 제124조 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지방재정법

- 제11조의 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- 제2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

- 제9조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을 “공용·공공용시설의 설치,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,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,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,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,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” 등 6개 항목으로 지방채 발행대상이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,

- 제10조 1항에서는 “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” 라고 규정 하고 있음.

□ 종합적인 검토 의견

○ 따라서 지방채의 발행은

- 앞에서 법적 근거를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
- 우리 군에 항구적인 이익이 될 성주2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써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다만, 성주2 일반산업단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893억이 투자되는 거대 사업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보면

- 2012년 금번에 100억, 2013년 200억, 2014년 100억으로 총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바,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